

## I

## 수입제도 변경사항 / 현안 사안

## 1. 식품 규제법 (개정) 2016

- 식품 규제법 2016 (개정)이 2016년 2월 2일부터 발효됨
- 이번에 포함된 개정사항은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세부항목들은 다음과 같음
  - ① 신감미료 ‘advantame’의 식품 사용 허용
  - ② 유아 조제분유의 새로운 성분으로 ‘bovine lactoferrin’의 사용을 100mg/100ml 까지 허용
  - ③ 유기농(또는 유사한 조건) 라벨이 붙은 제품의 경우 생산, 가공,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(Codex 가이드라인 GL 32-1999 또는 이와 동일한 가이드라인)에 부합하는 검사인증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
  - ④ 사람의 직접적 식용 목적을 위한 생우유 (raw milk)의 광고, 판매, 수입을 금지함
  - ⑤ 라벨링 목적으로 총칭 “Modified starches“의 사용을 허용함
- 세부내용은 [www.ava.gov.sg/legislation](http://www.ava.gov.sg/legislation) 접속 후 “Sales of Food Act” 선택 후, “Food (Amendment) Regulations 2016” 클릭하면 확인 가능
- \* 출처: 2016년 1월 29일, AVA ([www.ava.gov.sg](http://www.ava.gov.sg))

## 2. 조류독감(AI)발생지역산 가금류 수입금지

- 프랑스 로트 주와 오토가론 주
  - 로트 주와 오토가론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(HPAI) 바이러스가 발생함에 따라 AVA는 프랑스 해당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수입을 일시정지 조치함
  - 이번 싱가포르 수입 일시정지 조치는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임
  - 싱가포르 AVA는 지난해 12월 같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(HPAI)발생으로 프랑스 7개 지역 (오프레네주, 제르주, 피레네자틀랑티크주, 오토비엔주, 아베롱주, 도르도뉴주, 랑드주)의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수입을 일시정지 조치한 바 있음
- \* 출처: 2016년 1월 7일, AVA ([www.ava.gov.sg](http://www.ava.gov.sg))

○ 미국 인디애나 주 두보아 카운티

- 미국 인디애나 주 두보아 카운티에 있는 상업용 칠면조 농장에서 H7N8, 고병원성 조류독감 (HPAI) 바이러스와 저병원성 조류독감 (LPAI)이 발생함.
- AVA는 미국 해당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 제품의 수입을 일시정지 조치함
- 이번 싱가포르 수입 일시정지 조치는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임

\* 출처: 2016년 1월 19일, AVA ([www.ava.gov.sg](http://www.ava.gov.sg))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/ 주의사항

1. 싱가포르 관세청 앱을 이용해 관세 및 GST 납부가능

- 새로운 싱가포르 관세청 모바일 앱인 Customs@SG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관세 및 GST 신청 및 납부가 싱가포르 도착 전 가능하게 됨
- 이전에는 해외에서 면세허용범위 초과 구매 시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구매한 제품에 대해 신고한 후 세관납세 사무실 또는 싱가포르 체크포인트 도착홀에 있는 셀프서비스 세금 지불 키오스크에서 GST를 납부해야 했음
- Customs@SG의 사용으로 인해 여행자들은 납부를 위해 더 이상 세관사무실이나 키오스크에 들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짐
-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에 Customs@SG를 통하여 제품을 신고하고, 관세/GST를 납부하면 전자영수증이 발급되고 싱가포르에 도착해 세관 녹색채널을 통해 체크포인트를 통과하면 됨
- 체크포인트 통과 시 납세의 증거로 모바일에 저장된 전자영수증을 해당 검사관에게 보여주면 됨
-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모바일 뿐만 아니라 컴퓨터로도 이용 가능함
- 이 웹을 통해 불법으로 들여온 밀수 담배 등의 판매를 발견 시 제보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관세청에 궁금한 사항이나 피드백 등도 가능함

\* 출처 : 2016년 1월 13일, Singapore Customs ([www.customs.gov.sg](http://www.customs.gov.sg))

2.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

- 최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므로, 싱가포르 이민국 및 검역국 (ICA)과 식약청 (AVA)은 해외에서 축제상품이나 식품 등을 가지고 싱가포르로 입국하는

자국민이나 여행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들에게 수입항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체크포인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동 권고문을 발표함

- 세부사항은 가공식품 반입 시 허용량은 개인별 최대 5kg 또는 5리터로 총액 S\$100을 넘기지 말아야 함. 해산물 또는 승인된 원산국가 육류제품의 경우 개인별 최대 5kg 반입 가능함. 싱가포르 반입허용 물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VA 웹사이트([www.ava.gov.sg](http://www.ava.gov.sg))를 방문하거나 Sg Travelkaki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하면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. 이 모바일 앱은 아이튠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ICA 웹사이트([www.ica.gov.sg](http://www.ica.gov.sg))에서 금지, 제어 및 과세항목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
- 모든 제어 또는 과세 품목을 구매하고 싱가포르로 입국하려는 여행객은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하게 과세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로 인하여 통관 효율성이나 다른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함
- ICA는 보안이 해결되는 한 최대한으로 통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축제기간동안 체크 포인트를 사용할 때 여행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함.

\* 출처 : 2016년 1월 19일, AVA ([www.ava.gov.sg](http://www.ava.gov.sg))

### III

## 통관 컨설팅 Q&A

### 1. 싱가포르로 신선 과일과 채소 수출

Q : 싱가포르로 신선 과일과 채소를 수출하고자 합니다. 요구사항이나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
A : 싱가포르로 신선과일과 채소의 수출은 AVA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어느 나라 제품도 수출이 가능함. 신선과일과 채소라 함은 미가공된 과일 및 채소를 의미함. 즉 일종의 조제과정 예를 들면 자르거나, 껍질을 벗기거나, 통조림화 하거나 얼리는 등의 과정이 거처지면 이는 신선 과일과 채소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식품으로 분류됨.

#### 1) 제품이 식용으로 적합해야 함

- “Control of Plants (Import & Transshipment of Fresh Fruits & Vegetables) Rules” 의 규정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신선 과일과 채소에는 다음과 같

은 성분이 포함되면 안됨

- 금지된 농약 또는 잔류농약이나 독성화학물질의 잔류수준이 식품 규제법 부칙 9에 명시되어 있거나 FAO/WHO 합동식품 규격 위원회에서 명시한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

2) 열처리증명서(Phytosanitary certificate)가 필요한 경우

- 남아메리카 열대지역 나라에서 수입되어지는 신선과일과 채소의 경우 열처리 증명서가 요구되며 이 증명서는 수입되는 제품이 남미 잎마름병 (South American Leaf Blight, SALB)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또는 SALB가 없는 장소에서 성장했다는 것이 증명하기 위함임
- 수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서 열처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

3) 제품표시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함

- 제품을 담은 컨테이너 (카톤, 바스킷 등)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
  - 제품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
  - 제품 설명
  - 수출 및 포장 날짜